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노 동 일 자 리 과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구 미 시

「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」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10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○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 내 소규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

○ 사업의 기획·운영 및 수행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시간·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

1) 사업위치 : 구미시 일원

2) 예 산 액 : 1,800백만원(2027년도 기준 600백만원)

3) 사업내용 : 사업주·노동자 명의로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,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월 임차료 일부 지원

4) 지원금액 : 근로자 1인당 월 25만원 한도(월세 80% 이내 지원)

※ 조건별 차등 지급(중소기업 최대 25만원, 중견기업 최대 10만원 등)

나. 추진근거

1)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2)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3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16조

다. 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

라. 위탁조건

1)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, 책임성,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

2) 기업체 관련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

※ 기업체 지원 사업 : 기업체 환경개선 사업, 일자리 창출 사업, 기업체 교육사업 등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1) 선정방법 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
2) 평가내용 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
3) 평가방법 : 수탁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
3. 부서의견

○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을 통한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체 지원사업 등에 전문성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○ 근로자의 주거공간 문제 해소를 통한 관내 전입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시행 필요

○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시 기숙사 제공에 대해 타 지역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기업체의 참여율 높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1)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

2)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5조

3)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2027년도 예산편성 비용추계서

다.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: 2026년 제4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(총무과-29099(2026.9.1.)호)

라.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관계법령

□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·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노사관계 발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3.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교육·컨설팅에 관한 사항
4. 사업장의 고용·임금체계 개선 등 작업장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
5.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
6. 노사협력 우수기관·단체 또는 유공자 포상 등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7.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홍보·캠페인에 관한 사항
8. 그 밖의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,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,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「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지원대상) 시장이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·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
2.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 관련 단체
3. 경영자 총협회, 농공단지 관련 단체
4.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

제4조(사업 및 예산 지원 등) 시장은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근로자의 날 관련 행사
2. 근로조건 개선,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·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
3. 노사발전을 위한 노동정보지원 사업 운영
4. 노사민정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운영
5.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, 문화행사, 걷기대회, 등반대회 등 화합행사
6. 노동단체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, 연수, 세미나 등 활동사업
7. 근로자 국내·외 노동현장 및 산업연수
8.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·보건에 관한 사업
9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·창출,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□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제16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
2.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

2.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% 이상 증감하는 경우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사업 운영 인건비, 사업설명회 추진, 홍보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 : 2026년도 지급기준에 준하여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세출	600	600	600	1,800

4. 재원조달 방안 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국 비	-	-	-	-
도 비	-	-	-	-
시 비	600	600	600	1,800
민 간	-	-	-	-
기 타	-	-	-	-
합 계	600	600	600	1,800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노동일자리과 노사정책팀 정경환(☎ 480-620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소 계	산 출 기 초			
계	600,000,000				
기숙사 임차비	516,000,000	• (중소기업)	250,000원*12개월*110명	=	330,000,000원
		• (중견기업)	100,000원*12개월*155명	=	186,000,000원
인건비	53,640,000	• (실무자인건비)	3,600,000원*1명*12월	=	43,200,000원
		• (퇴직금 적립)	3,600,000원*1식	=	3,600,000원
		• (4대보험)	370,000원*1명*12월	=	4,440,000원
		• (참여수당)	200,000원*1명*12월	=	2,400,000원
운영비	2,680,000	• (설명회, 다과)	3,000원*60명*2회	=	360,000원
		• (회계감사비)	2,000,000원*1식	=	2,000,000원
		• (업무추진비 및 사무용품비)	320,000원*1식	=	320,000원
여 비	3,000,000	• (실무자 및 담당자 출장여비)	250,000원*12개월	=	3,000,000원
홍보비	24,680,000	• (버스 옥외광고 송출)	670,000원*8대(2개월)+부가세10%	=	5,896,000원
		• (버스 옥외광고 시트제작)	155,000원*8대+부가세10%	=	1,364,000원
		• (기숙사 홍보 물품(근로자))	15,000원*100개	=	1,500,000원
		• (기숙사 홍보 물품(기업체))	15,000원*100개	=	1,500,000원
		• (홍보 게릴라 현수막)	50,000원*130장	=	6,500,000원
		• (일간지 속지 팜플렛 광고)	15원*6,000장*4회*2개사	=	720,000원
		• (일간지 속지 팜플렛 제작)	150원*48,000장	=	7,200,000원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서

1. 평가개요

○ 평가기간 : 2026. 7. 3.(금) 15:30 ~ 17:30

○ 대　　상 :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

○ 수탁기관 : (사)경북경영자총협회

○ 대상기간 : 2024. 1. ~ 2026. 12.(현재)

○ 평가내용 : 당해연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

○ 평 가 자 : 2명(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장, 담당자)

○ 평가방법 : 평가표에 따른 부서 자체 평가

○ 평가항목 : 2개 분야 8개 항목

2. 평가결과 및 총평

○ 평가결과

총점 (100)	공통분야(45)				공통분야(55)			
	사업계획 (10)	예산관리 (10)	성과관리 (15)	인력관리 (10)	사업추진 (20)	사업홍보 (15)	만족도 (10)	개선노력 (10)
84	10	8	13	10	15	10	9	9

○ 총　　평 : 본 사업은 구미시 관내 중소기업 등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해 관내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, 사업량 확대와 지원조건 완화로 전년대비 참여 기업체 및 대상자 수 증가로 기업체 고용안정,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, 전입신고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 등 발생

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체계가 적정하고 관련 법령 및 위·수탁 협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음.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민간위탁성과보고서

1. 사업기간 : 2024. 1. ~ 2026. 12.
2. 사 업 비 : 1,800백만원(시비)
3. 사업내용
 ○ 사업주 또는 노동자 명의로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을 임차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, 월 임차료 일부 지원
4. 추진실적
 ○ 2024년 : 240명, 374,221천원 지원
 (㈜에스와이텍 등 71개 기업, 기숙사 229호)
 - 중소기업 : 신청호실 : 157호실, 지원인원 : 167명, 지원액 : 307,721,550원
 - 중견기업 : 신청호실 : 72호실, 신청인원 : 73명, 지원액 : 66,500,000원
 ○ 2025년 : 282명, 425,800천원 지원
 (이레케미칼 등 83개 기업, 기숙사 273호)
 - 중소기업 : 신청호실 : 206호실, 지원인원 : 215명, 지원액 : 366,900,000원
 - 중견기업 : 신청호실 : 62호실, 신청인원 : 62명, 지원액 : 56,200,000원
 - 관리비 : 신청호실 : 5호실, 신청인원 : 5명, 지원액 : 2,700,000원 지원

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결과

○ 위탁사무 개요

위탁기관 (부서)	위탁사업명	수탁기관명	위탁예산 (백만원)	위탁기간	비고
노동복지과	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사업	(사)경북 경영자총협회	1,800	2024. 1. ~ 2026. 12.	

○ 감사개요

- 기　　간 : 2026. 7. 24.(금) 15:30 ~ 17:30
- 감사범위 : 2026년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
- 감 사 반 : 노동복지과 노사정책팀장, 담당자

○ 감사방법 : 현장 점검

○ 감사결과 및 처분사항 : 적정

○ 기타사항 : 관련 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

소 관 부 서		노동일자리과
입	과 장	이 호 정
안	팀 장	황 병 헌
자	담 당 자	정 경 환 (480-6204)